

의안 번호	4555
----------	------

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회 운영 위원회
전문위원 김 현 속

의안 번호	4555
----------	------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: 서다운 의원(찬성의원 11인)
2. 건 명: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3. 안건 요지: 별 첨
4. 검토 의견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26년 3월 일

의회 운영 위원회

전문위원 김 현 숙



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26년 3월 9일 서다운 의원의 발의와 11인 의원의 찬성으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사유

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“서구”에서 “서구의회”로 정비하여 운영 주체가 서구의회임을 명확히 하고, 현행 운영 실정에 부합하도록 의원 구성, 임기, 의장단 구성 등 주요 규정을 조정하여 청소년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. 또한, 우수 의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참여 동기를 증진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을 「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(안 제명)
- 나. 조례 목적 조항 및 정의 조항 등에서 “서구”를 “서구의회”로 정비하여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함(안 제1조, 제2조)

- 다. “청소년 의원”을 “의원”으로 용어를 정비함(안 제4조, 제5조, 제7조)
- 라. 의원의 임기를 1년 이내로 하고,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 발생 시 공개 모집을 통해 충원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의장단 구성 인원을 조정함(안 제6조)
- 바.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방식을 정비함(안 제7조)
- 사.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함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소관부서 : 의회사무국
- 라. 입법예고 : 2026. 3. 11. ~ 3. 16.(5일간/예정)

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에서 "서구"를 "서구의회"로 정비하여 청소년의회 운영의 법적·행정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,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▲"청소년 의원"을 "의원"으로 용어 간결화 ▲의원 임기를 "1년 이내"로 조정 및 결원 충원 규정 신설 ▲의장단 구성 인원 조정 및 상임위원회 구성·위원장 선출 방식 정비 ▲적극 참여 의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임.
- 검토 결과, 본 개정조례안은 「청소년기본법」상 청소년 참여권 확대 취지에 부합하고,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